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7.10.13(금) 16:00

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### 3. 제안 이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#### ■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: 1,000백만원

#### ○ 출자 목적

- 충청북도-LG-성장사다리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펀드 출자

#### ○ 출자 근거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 제1호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제1항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 제11호

-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“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” 출자
- 기대 효과
  - 지역전략산업 등 중소.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
  - 성장 가능성 있는 기술혁신 보유 중소.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’은 2018년도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동 계획안 5쪽 사업계획서의 산출기초부분에 충북도가 ‘18년에 10억 원을 출자를 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추후 예산필요성에 대한 유무, 동 사업을 약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함.